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송부)사건 조사결과

위원회 사건번호	2026공익0138 2026공익0146	담당자	소속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성명 : 정황일 Tel)032-760-7473
접수일자	2026. 01. 22	처리일자	2026. 02. 12.
조사결과	1. 조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00 - 인천광역시 중구 00외 1필지 ○ 신고내용 00 물류센터 내 높은 층고를 이용하여 적층식 랙을 설치하고, 이를 단순 물품 적재용이 아닌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중층 구조물로 사용하고 있어, 물류센터 내 설치된 적층식 랙이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공익 신고가 접수됨. 2. 조사결과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적층식 랙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포장, 해체, 재포장 등)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로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다만 사람이 상주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26. 1. 28.에 관할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 물류센터 내부에는 물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적층식 랙(선반형 랙)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해당 랙에는 배송 관련 물품이 적재되어 상품 보관 및 출·입고 과정에서 물류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되고 있었음. ○ 다만, 점검 당시 적층식 랙이 사람이 상시 체류하거나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 위와 같은 점검 결과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적층식 랙은 물류설비의 범주 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조사 시점 및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사람이 상주하는 독립된 작업공간 또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 중층 구조물로 보기 어려워 「건축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피신고자	3명
행정상 조치 사항 (재정적 조치 포함)	☐ 없음
형사상 조치 사항	☐ 없음
신분상 조치 사항	☐ 없음
기타	
첨부	